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05호

제3중시설물의 지정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21일
서울특별시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대상 시설물			지정 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가산동 복합청사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129 (가산동)	금천구청장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1의 2]에 따른 지정대상	○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○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○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	
독산1동 복합청사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(독산동)	금천구청장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1의 2]에 따른 지정대상	○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○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○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	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06호

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75호(2011.06.30.) 및 영등포구 고시 제2017-57호(2017.07.06.)로 결정·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21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20,619	-

- 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03.02.까지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3. 관련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2) 및 영등포구 주택과(☎02-2670-3687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07호

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(중구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74(2019.2.21.)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1259호(2020.4.23.)호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(안) 열람공고 완료 후 『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』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21일
서울특별시

1. 중구 다산로 일대 보행환경개선 사업
가.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

자치구	위 치	지구면적	유 형	지정연도
중 구	다산로 일대	25,000㎡	보행유발지구	2019

나. 중구 다산로 일대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

- 1)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 - 변경 없음
- 2)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
 - 변경 없음
- 3) 차도와 보도의 분리,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,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,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 - 약수역~서울송도병원(약수동)/나눔의교회(다산동) 차도 폭축소 조정(3~4.6m → 3m)
 - 약수역~서울송도병원(약수동)/나눔의교회(다산동) 보도 폭확장 조정(1.5~4m → 3~5m)
 -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개소
 - 다산로와 다산로11길 접합부
 - 다산로 114-1 앞